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22.] [대통령령 제36773호, 2026. 10.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3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사항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및 4차 이상 위반 시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 대통령령 제3677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사항)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조의3(중전의 제5조의2)제2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가목 중 "특별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한다.

제7조의2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제7조의3의 제목 "(유통이력관리수입농수산물 등의 사후관리)"를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로 한다.

제9조의4 중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1월 1일"을 "기준일과 같은 날"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대상: 2022년 1월 1일
2. 제5조의2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사항: 2027년 1월 1일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5조의2제1항 관련)"을 "(제5조의3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바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 바.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3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2항 및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